

경기도 고양교육지원청

특정감사 결과 통보서

제 목 유치원회계 집행 부적정
 기관명 미래유치원
 내 용

「사립학교법」제29조(회계의 구분)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고, 교비회계의 세출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위한 경비,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에 의거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21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2항에 의거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되어있으며,

그런데 미래유치원에서는 상하수도요금 및 각종 소득세 등을 아래 [표1],[표2]와 같이 연체하여 22회, 총 87,690원의 연체금을 유치원회계에서 납부한 사실이 있다.

[표1] 미래유치원 상하수도요금 연체금 납부내역

연번	일자	제목	원가비목	지출액	비고 (연체료)
1	2019-07-08	(00162)4월,5월,6월 상하수도요금 지출	수수료및제세공과금	220,670	2,150
2	2019-09-02	(00234)9월 상하수도요금 지출	수수료및제세공과금	193,830	2,250
3	2019-11-29	(00371)11월 수도요금 지출	수수료및제세공과금	278,820	2,100
4	2020-02-28	(00462)2월 공과금[수도요금] 지출	수수료및제세공과금	239,970	5,030
5	2020-06-29	(00106)2020년3~6월 상하수도요금 납부	수수료및제세공과금	170,170	5,760
6	2020-07-27	(00144)2020년7월 상하수도요금 납부	수수료및제세공과금	131,020	870
계				1,234,480	18,160

[표2] 미래유치원 가산금 납부 내역

연번	일자	제목	원가비목	지출액
1	2019-07-18	(00185)4월분 근로소득세 가산금 지출	수용비	4,220
2	2019-07-18	(00186)3월분 지방소득세 가산금 지출	수용비	500
3	2019-09-27	(00261)9월 교직원 소득세[5월분][가산세] 지출	수용비	4,270
4	2019-11-30	(00378)11월 교직원 소득세 주민세[10월분] 가산세 지출	수용비	5,270
5	2020-06-29	(00107)2020년3월 근로소득세 가산세 납부	수수료및제세공과금	7,770
6	2020-07-27	(00146)2020.03월 지방세 지연납부 가산세	수수료및제세공과금	880
7	2020-07-27	(00162)2020년4월 근로소득세 지연납부 가산세	수수료및제세공과금	7,220
8	2020-10-05	(00240)2020.5월 귀속 지방소득세 가산세 납부	수수료및제세공과금	80
9	2020-11-02	(00276)2020년6월 소득세,사업소득세 가산세 납부	수수료및제세공과금	9,110
10	2020-11-19	(00322)2020.7월 지방소득세 가산세 납부	수수료및제세공과금	360
11	2020-11-30	(00306)2020년4월 지방소득세 가산세 납부	수수료및제세공과금	1,410
12	2020-12-17	(00358)2020년8월,9월 소득세,지방소득세 가산세 납부	수수료및제세공과금	13,160
13	2020-12-31	(00345)2020년6월 지방소득세 가산세 납부	수수료및제세공과금	2,000
14	2021-01-29	(00377)2020년9월 지방소득세 가산세 납부	수수료및제세공과금	1,160
15	2021-01-29	(00378)2020년10월 소득세 가산세 납부	수수료및제세공과금	8,420
16	2021-02-26	(00423)2020년11월 급여 소득세 가산세 납부	수수료및제세공과금	3,700
계				69,530

※ 감사통보 전, 부적정 집행액 87,690원 보전조치 완료

조치할 사항 미래유치원 설립자 및 원장은

- ①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유치원회계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 ② 관련자 1명에게는 ‘주의’ 처분(요구)합니다.

경기도 고양교육지원청

특정감사 결과 통보서

제 목 유치원 차량 운영 부적정
기 관 명 미래유치원
내 용

내 용

「도로교통법 시행령」제31조(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 제4호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는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또는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학원 또는 체육시설의 장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가목 단서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이어야 하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제35조(계약의 원칙) 및 제36조(계약담당자)에 따라 유치원에서의 계약담당자는 유치원의 원장이며, 계약의 원칙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공사·제조·구매·용역 또는 그 밖의 계약을 성실히 체결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제32조(세금계산서 등), 제54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따라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고, 유치원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미래유치원에서 아래 [표3]과 같이 차량소유 회사와 차량임차계약을 체결하고도 임차대금을 정당채주인 차량 소유 회사가 아닌 부정당 채주인 운전기사 개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

[표3] 통학차량 부적정 운영 현황

[단위:원]

연도	계약상대자	월지급액	운전기사 (대금 실지급처)	운영형태	비고
2018	(주)○○관광여행사	1,000,000	○○○	임차	
	(주)○○관광	1,000,000	○○○	임차	
2019	(주)○○관광여행사	1,000,000	○○○	임차	
	(주)○○관광	1,000,000	○○○	임차	

조치할 사항 미래유치원 설립자 및 원장은

- ①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차량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 ② 관련자 1명에게는 ‘주의’ 처분(요구)합니다.